

[사 건 명] 행심 2014-6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04.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은 2014. 3. 17. 인천광역시 ○○구 ○○로 757 소재 2층 전부에 국제 표준무도(라틴5종목, 모던5종목)과정의 댄스 스포츠 학원 가칭 ‘○○학원’의 설립, 운영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나. 피청구인은 2014. 3. 20. 청구인이 신청한 무도학원의 경우 그 교습과정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무도학원에 해당하고,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에서 정의한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4. 1.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11. 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II.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한 댄스스포츠 학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설이용 목적이 ‘예능’ 속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설립 등록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

III. 피청구인의 주장

- 가. 이 사건 신청한 댄스스포츠 학원은 체육시설법에서 정하는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무도학원에 해당하는 만큼, 학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이 사건 신청한 댄스스포츠 학원의 신청지가 절대정화구역이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체육시설법시행령의 무도학원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 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 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3
- 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 바. 「학교보건법」 제6조
- 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2. 판단

청구인의 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관계법령 및 판례,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가. 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 22840호, 2011. 4. 5. 일부개정) 제3조의 2,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종류 중 기예 계열에 ‘댄스’ 나 ‘무도학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 23250호, 2011. 10. 25. 일부개정) 제3조의 3, 제1항 별표 2를 개정하여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종류 중 기예 계열에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를 추가하였다.
- 나. 체육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16701호, 2000. 1. 28)에서 처음으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범위 중에 무도학원업을 신설하였고, 무도학원업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을 교습하는 업(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이라 규정을 하였으며, 이후 위 규정은 현행법령에서도 같다.
- 다. 위 2000. 경 체육시설법시행령의 개정취지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의 경우에는 무도학원으로서 체육시설이지만, 국제표준무도 과정(볼룸댄스)이 아닌 댄스 무도학원의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다만, 학원법에는 무도학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으나, 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 23250호, 2011. 10. 25. 일부개정)은 위 체육시설법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교습과정에 댄스항목을 추가하였고, 다만 기존의 체육시설법시행령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의 경우에는 체육시설로 규정한 만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은 학원이 아님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고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신청한 무도학원은 ○○고등학교로부터 50미터이내의 절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마. 대법원 판결(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은 이용목적에 따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의 경우에는 학원으로 설립·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나, 위 대법원 판결은 2011. 10. 25. 대통령령 23250호로 학원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판결로써 반드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 만약 무도학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하나의 국제표준무도과정(볼룸댄스)이라는 업을 가지고 체육시설로 신청할 수도 있고, 학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면, 무도학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이용목적이 체육시설이면서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학원으로 설립·운영할 수도 있는 탈법적인 위험성이 있는 만큼, 무도학원을 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법들의 취지를 몰각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이 사건 국제표준무도과정(볼룸댄스)의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받은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 인 만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